

해외인턴십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제정 : 2010. 03. 01.

□ 개정 : 2017. 03. 01.

제1조(목적 및 의의)

1.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의 일반선택 교육과정학점편성표의 산업체인턴십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외인턴십이란 해외 업체 및 기관 등(이하 “업체”라고 한다)에서 전공과 관련된 현장근무와 현지 언어 및 문화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 ① 국제협력처, 취업정보처, 공학인증센터, 각 학과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턴십
 - ② 정부에서 실시하는 해외인턴십

제2조(교육과정 학점 편성)

1. 해외인턴십 학점인정은 국내 인턴십 규정에 준한다.

제3조(이수)

1. 해외인턴십은 국내 인턴십 규정에 준한다.

제4조(신청자격)

1. 해외인턴십 신청자격은 본 대학교 학생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 ① 본교 재학생 중 입학 후 본교에서 4개 학기 이상 수학한자
 - ② 기 이수 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0/4.5 이상인 자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① 군 입대 예정인 자, 군복무 중인 자
 - ② 학칙 상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③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확정된 자

제5조(대상자)

1. 해외인턴십 대상자는 선발주관부의 선발이 확정된 자로 한다.

제6조(업체 선정 기준)

1. 해외인턴십 업체 선정은 해외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 인턴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 한다.
2. 학생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제7조(학점인정 기준 및 학점인정 절차)

1. 학기 미 등록시,
 - ① 미등록자는 추후 학기등록 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해외인턴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해외인턴십 참가서[별지서식 1]와 해외인턴십 참가자 서약서 [별지서식 2]를 국제협력처에 제출한다.
 - ③ 해외인턴십 과정이 종료된 후 본인이 6개월 이내에 해외인턴십 종합보고서[별지서식 3], 해외인턴십근무 확인서[별지서식 4] 및 기타 해외인턴십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해외인턴십 학점이전신청서[별

지서식 5]를 통한 학점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 ④ 학점은 해당 지도교수, 학과(부)장 혹은 주임교수, 학(대학)장, 국제협력처장,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친 후 총장의 최종승인을 받아 이전된다.
- ⑤ 학점이전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제출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⑥ 해외인턴십은 1회에 한한다.

제8조(평가)

1. 해외인턴십의 평가는 해외인턴십 종합보고서[별지서식 2]와 근무확인서[별지서식 3]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이 해외인턴십 학점이전신청서[별지서식 6]로 평가하여 국제협력처에 제출한다. 근무 확인서는 근무처의 지정양식으로 대체 가능하다.

제9조(의무)

1. 해외인턴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인턴과정 동안 부여된 업무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 ② 인턴기간 중 문제 발생 시 즉시 국제협력처에 보고한다.
 - ③ 해외인턴십 과정을 완료한 자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이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국제협력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인턴기간 중 체류국내 법규와 업체 사규를 준수하여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는다.

제10조(의무위반자 조치)

1.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한다.
 - ① 근무처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된 자
 - ② 고의적으로 근무처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③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1조(기타)

1. 본 규정의 집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 및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국제협력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국제협력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위 규정인 규정집의 제1항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정의 개정을 상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관련 제반 업무는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